

# 종립사학과 종교교과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종교학 전공  
03250@aks.ac.kr

- I. 들어가면서
- II.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 III. 종립사학의 종교교과교육과 자주성
- IV. 종교교과교육: 교양인과 성숙한 신앙인
- 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해방 이후 1949년 12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민주국가 발전에 대한 봉사와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대한 기여(제1조)를 목적으로 〈교육법〉이 제정된다. 〈교육법〉은 1997년까지 사립학교에 적용된다. 당시 도·시·교육구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시립, 도립 또는 구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로서(제83조)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84조). 가령 사립학교의 교원의 채용·해직은 감독청에 보고되고, 총장·부총장·학장·교장·원장의 채용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7조). 그리고 매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수지예산을, 매회계년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제88조).<sup>1)</sup>

1949년 〈교육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사인도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신앙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동일한 수준의 학교 수료자·졸업자는 국립·공립·사립의 구별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제7조). 이후 1961년 9월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이 제정되고,<sup>2)</sup> 1963년 6월 일본 사립학교법의 골격을 모방한 〈사립학교법〉이 제정된다.<sup>3)</sup> 이 법의 목적은 일본의 경우처럼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제1조)이다.<sup>4)</sup> 이 내용은 이후에 사학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문제로 연결된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의 취지는 합리성·민주성·투명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이다. 사학에 공공성보다 사적 소유권이 강조되어 사학설립(경영)자의 전횡적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부패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학의

1) 〈교육법 제정 1949. 12. 31. 법률 제86호〉; 〈교육법 폐지 1997. 12. 13. 법률 제5437호〉.

2)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제정 1961. 9. 1. 법률 제708호〉;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 1963. 12. 5. 법률 제1466호〉.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의 목적은 “국민교육의 정상적 질서를 확립하고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또는 학교법인(사립학교의 설립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관하여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과 기타의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이었다.

3) 신현직, 「사립학교의 법적지위」, 『사회과학논총』 8(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90쪽.

4) 〈사립학교법 제정 1963. 6. 26. 법률 제1362호〉.

공적 성격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sup>5)</sup> 그와 관련하여 개방형 이사 도입과 감사선임 문제, 직계존비속의 교장 임명금지와 교장임기 제한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다.<sup>6)</sup>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전교조가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발 논리 등이 연이어 보도된다.<sup>7)</sup> 그 과정에서 2007년 7월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된다.<sup>8)</sup>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두 축의 충돌 현상이다. 개정 과정에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인 공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학교라는 사적인 하드웨어를 이용하면서도 공공성에 초점을 두어 사학 설립주체의 교육이념 구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율성 확보 문제를 간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sup>9)</sup> 이후 종립학교를 포함한 사학에서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 또는 조화 문제는 아젠다(agenda)로 설정된다.<sup>10)</sup>

사학의 자율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서술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공공성이나 자율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정확히

- 
- 5) 최순영, 〈사립학교법 개정과 방향에 대하여(인천남동학운협 강연)〉, 2004. 12. 10(최순영의원 홈페이지).
  - 6) 이시우, 「사립학교운영과 사립학교법」, 『교육법학연구』 13(대한교육법학회, 2001), 127-130쪽.
  - 7) 최상천, 「사립학교의 전환: 사유재산에서 공교육기관으로 –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 『인물과 사상』 95(인물과사상사, 2006), 47-51쪽.
  - 8) 〈사립학교법 법률 제8888호 일부개정 2008. 03. 14〉 제14조(임원). 2007년 7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를 보면 대학평의원회(동법 제26조의2)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5인 이상의 허수 위원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학교법인 임원(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 9) 김병주·김은아·안장자, 「사립학교법에 나타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교육관련집단의 인식」, 『동아인문학』 13(동아인문학회, 2008), 464쪽.
  - 10) 박부권,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 『교육사회학연구』 18-1(한국교육사회학회, 2008), 22-23쪽; 34-35쪽. 박부권은 각각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두 입장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자주성이 자유주의의 전통, 공공성이 공동체주의의 전통에 서 있음을 지적한다.

말하면 공공성의 확대를 강조한 측은 사학의 자주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주성의 확대를 강조한 측도 사학의 공공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양측 주장에는 사학에서 공공성과 자주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 전제된다. 사실 현재의 교육 상황에서 사학의 공공성이나 자주성 가운데 어느 한쪽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것은 교육적·정치적·법리적 측면 등에서 매우 복잡한 논리와 과정이 전개되어야 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사학에 대해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론을 주장하지만 그 균형론이 모호한 경우이다. 여기서 균형론은 사학이 공공성과 자주성을 절반씩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 지점’은 여러 상황을 포함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적용되는 변수에 따라 공공성과 자주성 가운데 어느 한쪽이 강조될 뿐이다.

그렇다면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이 충돌하고 그 관계 설정이 모호한 현 시점에서 요청되는 것은 사학에서 공공성과 자주성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다.<sup>11)</sup> 나아가 종립사학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종교교과교육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종립사학과 종교교과교육에 대해 공공성과 자주성의 관계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현 시점에서 사학 가운데 특히 종립사학, 그리고 종교교과교육을 대상으로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자율성은 〈사립학교법〉 제1조에 명시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주성은 교육의 자주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조율한다. 제3장에서는 종립사학을 포함한 사학의 자율성이 축소된 배경, 그리고 종립사학이 국·공립학교 및 일반 사학과 차이를 보이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으로 종교교과교육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주로 개신교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의 현장을 살펴본 후 앞에서 조율된 공공성과 자율성의 관계에 따라 종교교과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검토한다.

11) 조석훈,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법학연구』 16-2(대한교육법학회, 2004), 277-278쪽. 조석훈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구상에서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논리가 제시된 이후 새롭게 부각된 책무성(accountability) 개념으로 양자의 조화를 설명한다.

## II.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은 다양한 법률에서 동시에 언급된다. 주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①항)와 의무교육(②항; ③항),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임(⑤항), 교육제도와 운영과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법정주의(⑥항) 등이 규정된다. 제31조 가운데에서도 사학의 자주성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④항)는 내용이다.<sup>12)</sup>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능력’은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법 앞의 능력’이다. 따라서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과 같은 종류의 능력’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맥락이다.<sup>13)</sup> 동조 제6항의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서는 국민 교육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사법적 관계와 공법상 권리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의 차별이 인정된다.<sup>14)</sup>

둘째, 1949년 12월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1997년 12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이다. 제3조(학습권)에서는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할 권리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된다. 또한 제9조(학교교육) 제2항에서는 ‘학교의 공공성’,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학에 대한 지원·육성’과 ‘사학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12)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 10. 29.〉.

13)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교육법제96조제1항위헌확인】 [현공제5호]〉.  
현재는 교육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기능을 네 가지로 판시하였다. ①교육으로 개인의 잠재 능력을 계발(啓發)하여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의 마련, ②문화적·지적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하여 문화 국가 촉진, ③합리적·계속적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습성화하여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 ④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켜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 실현. 당시 현재는 개인적 능력이 있는 만 6세 이전의 아동에게 교육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입학을 허용하지 않아도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4)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33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위헌소원등,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등,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현공제29호]〉.

설립목적의 존중'이 명시된다. 즉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이 동시에 규정된 것이다. 그 외에 사학의 공공성 및 자주성을 유추할 수 있는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sup>15)</sup>

표1-교육기본법: 공공성과 자주성 관련 조항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li> <li>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li> </ul>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li> <li>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li> </ul>
제6조 (교육의 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도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li> <li>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b>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b>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li> </ul>
제7조 (교육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인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li> <li>② 교육재정을 인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li> </ul>
제9조 (학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li> <li>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li> <li>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li> </ul>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조제목개정 2007. 12. 21]</li> </ul>
제12조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li> <li>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생략.</li> </ul>

15)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일부개정 2008. 03. 21>.

제13조 (보호자)	① 생략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이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b>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b>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셋째,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이다. 제1조에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즉 사학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이 명시된다. 다만 이 법의 최종 목적은 ‘사학의 건전한 발달 도모’에 있다. 법은 사학에 제반 영역에서 합리성·민주성·투명성 등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 외 사학의 공공성 및 자주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sup>16)</sup>

표2-사립학교법: 공공성과 자주성 관련 조항

제14조 (임원)	<p>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후 생략.</p> <p>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p> <p>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p> <p>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흘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 7. 27]</p> <p>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원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 7. 27]</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27]</p>
--------------	-----------------------------------------------------------------------------------------------------------------------------------------------------------------------------------------------------------------------------------------------------------------------------------------------------------------------------------------------------------------------------------------------------------------------------------------------------------------------------------------------------------------------------------------------------------------------------------------------------------------------------------------------------------------------------------------------------------------------------------------------------------------------------------------------------

16) 〈사립학교법〉 법률 제8888호 일부개정 2008. 03. 14).

표2-계속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제43조 (지원)	<p>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li> <li>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li> </ol>
제43조 (지원)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p>
제6조 (사업)	<p>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삭제 [99. 8. 31] ③ 생략 ④ 생략.</p>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p>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li> <li>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 이 있을 때</li> </ol>
제47조 (해산명령)	<p>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li> <li>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p>

넷째, 1997년 12월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이다.<sup>17)</sup> 이 법은 〈교육 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국·공·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17) 〈초·중등교육법〉 제정 1997. 12. 13. 법률 제5438호;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917 호 일부개정 2008. 03. 21).

등처럼 주로 ‘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 외에 사학의 공공성 및 자주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sup>18)</sup>

**표3-초 · 중등교육법: 공공성과 자주성 관련 조항**

제3조 (국 · 공 · 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국가가 설립 ·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 (학교의 설립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li> <li>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i> <li>③ 사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i> </ul>
제6조 (지도 · 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으며, 공 ·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 (학교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 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 ·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 이하 “관할청” )의 인기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li> <li>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ul>
제10조 (수업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의 설립 · 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li> <li>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 )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li> </ul>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5. 3. 24] [시행일 2005. 9. 25]
제18조의4 (학생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시행일 2008. 3. 1]
제23조 (교육과정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li> <li>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li> <li>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ul>

18)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일부개정 2008. 03. 21〉.

표3-계속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p>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 8. 31]</p> <p>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99. 8. 31]</p> <p>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 8. 31] [시행일 2000. 3. 1]</p>
-----------------------	----------------------------------------------------------------------------------------------------------------------------------------------------------------------------------------------------------------------------------------------------------------------------------------------------------------------------------------------------

지금까지 살펴본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관련 법률에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립·공립·사립학교에 모두 자주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둘째, 법적으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 모종의 차이가 인정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학교의 ‘설립·경영’ 측면을 포함하여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차이를 보여준다. 셋째, 〈사립학교법〉 제1조에 근거할 때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건전한 발달 도모’ 측면에서 조율될 수 있다.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상 사학의 공공성은 대체로 사학이 국가사회의 공공목적과 공공이익을 위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라 사학은 공익을 위한 기관이라는 공익성, 공학과 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형평성, 정부로부터 재정적 조성을 받는다는 조성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사학의 공공성은 사학의 조직과 운영이 교육적·사회적·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보하는 개념이다.<sup>19)</sup> 그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을 보면 사학의 공공성 근거는 다음과 같다.<sup>20)</sup>

19) 김병주 외, 앞의 논문, 467-468쪽.

20) 〈현재 1991. 7. 22. 89헌가106[합헌] 결정〉; 허종렬,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그 비판」, 『교육비평』 6(교육비평사), 2001, 47-52쪽.

표4-사학 교육의 공공성 논리(현재 판결)

사학 교육의 공공성 근거	사학 교육 공공성의 구체적 보장
① 공립학교에 대한 보완적 역할	① 국·공·사립학교에 공통된 설립 기준의 적용 ② 국·공·사립 졸업자에 대한 동등 자격 부여 ③ 교원의 자격과 종별을 국·공·사립학교에 동등하게 규정 ④ 교육목적·교육과정·교과서 등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동일한 규정
② 교직의 공공성	⑤ 학생선발 제도에서 국·공·사립학교의 동일한 취급 ⑥ 공납금과 물적·인적 시설의 균등한 유지와 향상 추구 ⑦ 공립학교와 동일한 사립학교 운영 감독 및 통제

사학은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요청받는다. 여기서 관건은 사학의 공공성을 양양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학의 공공성을 양양하기 위해 단순히 감독만을 강화한다면 자주성은 축소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사학의 공공성이 양양책으로 민주적 사학행정, 즉 학교법인을 포함한 사학경영기구의 민주화 방법이 요구된다.<sup>21)</sup> 그와 유사하게 사학의 공공성을 사학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뮤어두는 학사 운영보다 사학법인의 인사와 재정 등의 투명성 확보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공익이

표5-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자율성 (특수·자주성)	공공성	비고
- 사인 또는 법인 이 설립·경영	-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의 지도·감독 주체와 학교규칙 인가는 교육감(공립학교와 동일)	- 학생선발권/학교선택권 악화: 중학교 무시험제도, 평준화 정책 등
- 설립 또는 건학 이념	- 수업료, 납부금 징수 등의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도 조례에 의거함(공립학교와 동일)	- 재정지원[私學助成]: 의무교 육과 평준화로 인한 사학재 정의 곤란
- 설립시 특별시· 광역시·도 교육 감 인가. 폐지나 대통령령 중요사 항 변경시 교육 감 인가	- 국민의 학교시설 이용은 시·도 교육규칙에 의거함(공립학교와 동일) - 학교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생의 인 권 보장(국·공립학교와 동일)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과는 대 통령령으로 제시함(국·공립학교와 동일)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국·공립학교와 동일)	- 건전성 요구: 재정적 지원과 공공에 따른 힙리성·민주성· 투명성 등 - 인사권과 재정운용의 범위 설정 - 건학이념의 실현 통로 -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

21) 김병주 외, 앞의 논문, 469쪽.

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학관계법의 개정,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책 마련, 재정 지원에 대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사학의 청구권 보장 등이 방안으로 지적되기도 한다.<sup>22)</sup>

다음으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에 근거하여 사학의 자율성이 확보되려면 국가의 지나친 지배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 그리고 교육기구와 내용에 대한 교육자의 자주적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은 국·공·사립의 구별 없이 적용되지만 특히 사학에 더 요청된다.<sup>23)</sup> 설립주체가 다른 만큼 국·공립학교에 비해 인사와 재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현재까지 사학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교육의 다양성 보장, 수월성의 향상,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의 논리로 정당화된다.<sup>24)</sup>

그와 관련하여 특히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사학의 특수성은 설립주체가 사인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관리운영상의 사적자치, 다양한 세계관이나 교육학이론에 기초한 특색 있는 교육방법론의 선택 등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자주성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특히 인사와 재정에 대한 운용권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sup>25)</sup>

현재까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주장들의 근거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표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비고 부분은 종립중등학교의 경우에 종교의 자유 부분과 건학이념의 실현 등과 관련하여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의 표를 보면 사학은 자율성을 지니지만 국·공립학교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공성을 요구받는다. 사학의 자주성은 주로 교육선택권과 교육의 질 확보 차원, 사학의 공공성은 주로 사학에 교육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의 문제점과 사학의 교육여건 및 환경에 대한 불신 차원에서 요구된다.<sup>26)</sup> 나아가 자주성은 사인 또는 법인의 특색 있는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의 질적 향상, 공공성은 주로 경영의 투명성에

22) 허종렬, 앞의 논문, 53-54쪽.

23) 김병주 외, 앞의 논문, 465-466쪽.

24) 위의 논문, 470쪽.

25) 신현직, 앞의 논문, 91-95쪽; 100쪽.

26) 김병주·김은아·우석구,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의식이 제35차 개정 사립학교법 인식에 미친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6-1(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227-230쪽.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특히 공공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학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sup>27)</sup>

최근에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주장들은 대체로 양자가 동시에 양양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지닌다. 그 방향은 한편으로 사학의 자주성이 학교법인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관련당사자들의 민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학의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학에서 공공성과 자주성은 표면상으로 갈등 관계로 보인다. 그렇지만 두 개념을 모두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그 갈등의 해소 여지가 보인다. 가령 사학의 공공성을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에 입각한 교육의 결과가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충족시키면서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을 사학에 대한 국가 행정권한의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사학 내부의 민주적 자율 통제로 이해하는 것이다.<sup>29)</sup>

그렇다면 사학에서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는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실현 차원에서 ‘공공성 속의 자율성’으로 조율될 수 있다.<sup>30)</sup> 분명히 특수성과 자주성을 포괄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헌법 재판소도 ‘보편적 교육이념과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을 지향하여 나름의 특성을 개발·배양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학은 설립자의 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31)</sup> 그렇지만 사학의 자율성에는 사학이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7) 〈현재 2001. 1. 18. 99헌바63〉(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결정); 강경근, 「학문의 자유와 사립학교 관계법률의 헌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0(한국 토지공법학회, 2008), 150쪽.

28) 신현직, 앞의 논문, 91-95쪽; 100쪽.

29) 김병주 · 김은아 · 안장자, 앞의 논문, 470-471쪽.

30) 고병철, 「한국 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 - 종립 고등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 연구』(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28-129쪽.

31) 〈현재 1991. 7. 22. 89헌가106〉

교육기관이라는 점, 그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이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sup>32)</sup>

### III. 종립사학의 종교교과교육과 자주성

제2차 교육과정(1963-72) 시기에 공포된 〈사립학교법〉(1963. 6)은 국가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제2차 교육과정을 거쳐 제3차 교육과정(1973-81)까지도 사학의 자율성은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사학의 자율성 축소 현상은 특히 제2차 교육과정 후반부인 1970년경을 전후하여 제정된 정책들과 관련된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1968년 7월 15일에 국민학교의 중학교 입시준비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7·15입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중학교 무시험 제도는 1969년부터 서울특별시 1970년도부터 부산·대구·광주·인천·전주·대전·춘천·청주·제주 등의 도시에 적용되고, 197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sup>33)</sup> 제3공화국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앞두고 서울시내 사립중학교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시설 불량 학교에 신입생 배정을 중지하거나 시설 보완조치에 따라 신입생을 배정하겠다는 등의 사학 통제 조치를 단행한다.<sup>34)</sup>

제3차 교육과정 전반부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진행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3년에 확정되어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에 실시되고 1975년부터 인천·광주·대구 등의 도시로 확대 실시된다. 그 과정에서 ‘사학의 자주성 상실’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렇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은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제3차 교육과정 후반부에는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진행된다. 정부는 1979년에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을 발표한다. 그리고 제4차 교육과정

32) 〈현재 2001. 11. 29. 2000현마278〉(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결정).

33) 양철문, 『한국 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교학연구사, 1998), 286-287쪽;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의 “교육50년사 제3장 초·중등교육 부분”([http://www.mest.go.kr/me\\_kor/intro/publicrelation/history/index.html](http://www.mest.go.kr/me_kor/intro/publicrelation/history/index.html)).

34) 김형구, 「한국 중등사학의 성장」, 『교육학연구』 41-2(한국교육학회, 2003), 340-341쪽.

(1981-87) 시기인 1984년 8월에 개정된 〈교육법〉 제8조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를 명시한다.<sup>35)</sup>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다.<sup>36)</sup>

위의 내용 가운데 특히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는 사학 법인의 재정난 악화, 치열한 고교 입시, 고교 입시를 위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심화된 학교 격차, 과중한 교육비, 수많은 수험준비용 학관 등장 등의 현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중학교 무시험 제도로 인한 사학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국가는 1971년부터 사립 중학교에 대한 국고보조를 단행한다. 그렇지만 사립중학교의 신·증설이 억제되고, 기존 사립중학교가 선별적으로 정비·육성되면서 사립중학교의 비율은 감소된다. 나아가 1974년부터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사학 재정의 약화로 이어지고, 정부는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과거의 방침과 달리 1977년부터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국고보조도 단행한다.<sup>37)</sup>

사실 국고의 사학 보조는 1949년 〈교육법〉 제정 당시에 없던 것이다. 당시 〈교육법〉 제71조에 교육구·시·도·특별시의 교육비에 대한 국고 보조, 교육구·시에 대한 도의 보조 규정과 함께, 사학에 대한 국고·특별시·도의 재정 보조[助成] 금지 조항이 있었다.<sup>38)</sup> 이 규정은 1963년 11월 개정까지 〈교육법〉 제71조 ④항을 통해 지속된다. 그렇지만 동년 11월 이후 〈교육법〉에서 사학에 대한 국고 보조 금지 규정이 사라진다.<sup>39)</sup> 오히려 정부는 1971년 12월 기존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기관과 그 교원에 대한 국고와 지자체의 부담 규정을 명시하고, 1979년에 의무교육을 중학교로 확대한다.<sup>40)</sup>

35) 〈교육법, 1984. 8. 2. 법률 제3739호〉. 제8조(의무교육)에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녀에게 6년과 3년간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와 시설 확보 조치 의무 등이 규정된다. 그리고 제8조의2(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에 3년의 중등교육이 순차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된다. 그와 관련하여 〈교육법 1949. 12. 31. 법률 제86호〉 제8조에는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와 그에 대한 부모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만이 명시된다.

36) 김형구, 앞의 논문, 341-342쪽.

37) 양철문, 앞의 책, 286-287쪽; 318-319쪽.

38) 〈교육법 제정 1949. 12. 31. 법률 제86호〉; 〈교육법 폐지 1997. 12. 13. 법률 제5437호〉

39) 〈교육법 일부개정 1963. 8. 7. 법률 제1387호〉; 〈교육법 일부개정 1963. 11. 1. 법률 제1435호〉.

40)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958. 12. 29. 법률 제514호〉; 〈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 1963. 12. 5. 법률 제145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971. 12. 28. 법률 제2330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1971년과 1977년의 국고 보조 상황에 대해 두 가지의 인식이 있다. 하나는 국고 보조가 교육정책에 따라 사학에 수동적으로 주어졌다는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사학의 적극 협조가 있었다는 인식이다. 후자는 평준화 제도가 사학의 적극 협조, 즉 사학이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포기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학의 범주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정착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sup>41)</sup>

두 가지 다른 인식에서 불구하고 국고 보조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는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포기, 그에 따른 사학 조성 등으로 사학에 대해 공공성의 요구 수위가 높아졌다는 데에 있다. 이는 현재의 사학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합리성·민주성·투명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사학은 이러한 요구 근거들을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인식한다.

종립중등학교도 중학교 무시험 제도, 고교평준화 정책,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국고 보조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한 사학의 공공성 담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종립중등학교는 종교교과교육의 운영 차원에서 국·공립학교 및 일반시학과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종립중등학교는 종교교과교육을 전학이념과 종립사학의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종교교과교육은 종립사학과 국·공립학교의 구분 지점이다.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육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현재까지 법적으로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이 허용되지 않는다. 1949년의 〈교육법〉 제5조에도 국·공립학교에서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허용되지 않는다.<sup>42)</sup> 이 조항은 1997년 12월 〈교육법〉 폐지 당시까지 지속되다가 동월 제정된

---

호).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에는 교부범위가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 전액과 설치·경영에 관한 경비 전액, 공립의 각급학교교원(서울특별시가 설치·경영 하는 학교 교원은 제외)의 봉급 반액 등(①항)이, 제11조에는 공립 각급 학교교원의 봉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규정되었다.

41) 김병주·김은아·안장자, 앞의 논문, 468쪽.

42) 〈교육법 제정 1949. 12. 31. 법률 제86호〉 제5조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로 이어진다. 당시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이 조항이 현재까지 지속된다.<sup>43)</sup>

다만 현실적으로 국·공립학교에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부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과거에 국립대학에도 교육과정에 특정 종교 관련 교과목을 두고 신학자 또는 교학자를 강사로 채용한 경우들이 있었다.<sup>44)</sup> 종립중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비공식적 종교교육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법적 차원의 정교분리와 교육 -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자주성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종교교과교육은 종립사학과 일반사학의 구분 지점이기도 하다. 일반사학에는 국·공립학교와 다른 건학이념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 건학이념의 직접 실현이 가능한 교과목이 국가 교육과정 안에 배치된 경우는 없다. 그에 비해 종립사학의 건학이념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양선택과목에 포함된 종교교과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종교교과교육을 통해 건학이념의 공식적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사학과 종립사학의 자주성 확보 통로에는 차이가 보인다.<sup>45)</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종립사학은 자주성 추구를 위해 종교교과를 활용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사학의 경우와 달리 종교교과교육은 자주성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통로인 셈이다. 종교교과교육이 가능한 근거는 ‘종교선전’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이다.<sup>46)</sup> 종교의 자유에 입각한 종교교과교육은 법적으로

43) 〈교육법 폐지 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제정 1997. 12. 13. 법률 제5437호〉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강돈구·윤용복·이혜정·송현주·류성민, 『종교교육 비교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9), 39쪽.

4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학위수여이행]〉[공98. 12. 15[72], 2830]. 종립대학교도 종교교육을 통해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가령 종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 유지와 재학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학생이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종립대학교와 일반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중등학교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

‘종교선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또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정교분리 원칙과 사학에 대한 국고 보조 상황에서 국가의 교육과정에 언제부터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포함되었는가?<sup>47)</sup> 이는 자주성 추구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일반사학과 종립사학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종교 과목이 국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편입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1981-87) 시기이다. 그 위치는 논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과 함께 자유선택과목이다. 당시 자유선택과목은 이수단위 수가 0-8단위였다. 이는 입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자유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즉 종교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1987-92) 시기에도 종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자유선택과목에 배치된다.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 시기와 달리 자유선택과목의 이수 단위수가 2단위로 배당된다. 이는 자유선택과목이 실질적인 교과가 되었다는, 즉 학교가 철학, 논리학, 교육학, 심리학, 생활경제, 종교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 과목을 선택해서 가르쳐야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당시 종교교과서도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인정을 받는 인정도서로 인정받게 된다.

제6차 교육과정(1992-97) 시기에는 자유선택과목의 명칭이 교양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종교과목도 교양선택과목이 된다. 종교수업 단위는 4단위로 증가된다. 당시 교육과정에서는 종교 교과서에 대해 목차와 내용 구성의 방향이 제시된다. 당시의 목차는 인간과 종교, 세계 문화와 종교, 한국 문화와 종교, 종교경험의 이해, 현대 사회와 종교,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역사 등이다. 그리고 일선 종교교사들을 위해 종교교육에 대한 해설서도 편찬된다.

46) 황준성·박재윤·정일환·문성모·신지수,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 판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19-2(대한교육법학회, 2007), 183-191쪽.

47) 이후 서술은 다음의 글 참조.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 중등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46(한국종교학회, 2007), 20-30쪽;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7-7호, 1987. 3. 31. 중학교 교육과정, 제88-7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1992-11호, 1992. 6. 30. 중학교 교육과정, 제1992-17호 1992. 10. 30.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1997-2007) 시기에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처럼 교양선택과목으로서 종교과목의 이수단위가 4단위로 배정된다. 그렇지만 종교과서의 목차는 인간과 종교, 종교 경험의 이해,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 종교와 문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한국 종교와 문화, 종교 공동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등으로 변화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의 목표는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실존적인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주어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을 양육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즉 신앙심 확충과 종교에 대한 건전한 상식 함양의 두 가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는 각각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연관된다.

2007년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공포된다. 교양선택과목 명칭에는 ‘과목간의 위계성을 확보하고,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생활’이 포함된다. 그에 따라 『철학』은 『생활과 철학』, 『논리학』은 『생활과 논리』, 『심리학』은 『생활과 심리』, 『교육학』은 『생활과 교육』, 그리고 『종교』는 『생활과 종교』로 변경된다.<sup>48)</sup>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르면 『생활과 종교』의 시수는 4단위이다. 다만 이전처럼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sup>49)</sup>

지금까지 살펴본 제4·5·6·7차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교분리와 교육·종교분리의 원칙하에서 국가가 ‘종교’를 공적 교육과정에 점차 편입시켰고, 이로써 종교선전을 위한 종교교과교육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종립사학과 국·공립 또는 일반사학 사이의 차이가 분명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런 현실은 종립사학이 학교 운영상의 공공성, 종교교과교육이 정규 교과교육만큼의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명한 것은 종립사학이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선전으로서의 종교교과교육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편입되면서 교육의 자주성 확보 통로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그와 관련하여 비록 제7차

---

4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4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교육과정의 종교교과 목표가 신앙심 확충과 건전한 종교 상식 함양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에 종교의 자유 문제가 종교교과교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종교의 자유에서 신앙 또는 무신앙의 자유가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종교과목을 교양선택과목으로 운영할 때 복수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주도록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반영이다.

#### IV. 종교교과교육: 교양인과 성숙한 신앙인

종교교과교육이 진행되는 종교사학의 현장은 어떠한가? 2008년 7월의 한 언론 기사는 최근 개신교계 종립중등학교의 현장 상황을 잘 보여준다.<sup>50)</sup> 그에 따르면 개신교계 종립 중학교는 종교수업을 ‘교과재량’이나 ‘창의적 재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종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약간 복잡하다. 1학년에게는 종교수업이 ‘교과재량’, ‘창의적재량’, ‘선택교과’ 순으로 편성되어 운영된다. 그에 비해 2학년과 3학년에게는 종교교과가 대체로 ‘선택교과’로 편성되며 간혹 ‘창의적재량’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대체로 개신교계 종립중등학교에는 종교교과교육 이외에도 별도로 예배 시간이 운영된다. 예배 운영은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예배의 운영 횟수는 정기적인 경우에 주1회, 월 1회, 월 2-3회 등이다. 그에 비해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주로 절기나 특별한 경우에만 예배가 운영된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압도적이다. 예배는 교육과정 외에 한 시간을 더 추가하거나 교과재량이나 창의적재량의 형태로 운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선택이 배제된 예배 실시가 지침에 위배되는 교육활동’이지만, 예배 운영에 대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식한다.

그 외에 종립중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종교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의 종류는 다양하며 종교교사가 동아리 지도교사가

50) 「52개교 94% 전교생 예배, 감리회 교목세미나, 종교교육 현황 발표」, 『기독교타임즈』, 2008. 7. 17.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다만 점심시간의 학생들 대상 종교활동은 점심시간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교육청은 대체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한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그에 대해 복무지도감독권이 있는 학교·시·도교육청에게 위임하는 입장이다.<sup>51)</sup>

위의 상황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개신교계 중등학교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위의 서술을 천주교계나 불교계 중등학교의 경우에 적용해도 전반적으로 별 무리가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제약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종교교과교육이 포기되지 않는다. 종립학교에서 종교교과교육은 학교의 건학이념 또는 설립목적의 실현,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 확보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는 종교교사들은 종교교과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다수의 종립학교에서 종교교과교육은 신앙교육으로 진행된다. 가령 개신교계 학교의 종교교과교육은 대체로 예배와 함께 성서를 통해 교리 (doctrine)를 가르치는 교육(indoctrination)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복수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과목선택권을 주도록 한 점,<sup>52)</sup> 법조계에서 종교의 자유 가운데 내심의 자유로서의 신앙 또는 무신앙의 자유를 외현적 자유로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경향,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교육의 일차적 목적으로 교양인 양성이 강조되는 경향 등은 종립사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신앙교육이 제한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 가운데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앙 또는 무신앙의 자유가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은 종립사학이 풀어야 할 난제로 등장한다.<sup>53)</sup> 가령 대학예배 참석이 졸업요건인 기독교계 사립대학의 학칙은 합법적이지만 그 직접적 또는 일차적 목표가 복음

51)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e\\_kor/civil/intro/faq/qa\\_0/qa\\_02/1212008\\_10379.html](http://www.mest.go.kr/me_kor/civil/intro/faq/qa_0/qa_02/1212008_10379.html)).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인 방과후학교 활동 등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종교활동에 관해서는 복무지도감독권이 있는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라는 입장이다(2008년 7월 8일자 전자 민원창구 내용).

52) 학생들의 묵인하에 서류상으로 복수과목 개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종교과목만 개설 되는 경우들도 있다.

53) 송기준, 「판례분석: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76 판결 비판」, 『민주법학』 37(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409-441쪽.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있다면 문제가 된다. 대학예배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대학예배는 일차 목표를 보편적 교양인의 양성에 두고, 이를 위해 강연과 드라마 등으로 예배 형식을 다양하게 하고, 참여 학생에게 태도 변화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sup>54)</sup>

신앙 또는 무신앙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종교교과교육을 전면적인 종교선전교육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종립중등사학에 위기로 작용한다. 학생의 신앙 또는 무신앙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은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발생될 수 있기에 평준화정책을 폐지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sup>55)</sup> 또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확보도 학생의 신앙 또는 무신앙이 변화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종립사학에서 종교교과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도, 교육부고시 제1997-15호(1997. 12. 30)에서 확인되듯이, 종교교육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의 학교가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도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복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가 여건에 따라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종교교과교육이 가능하지만, 믿지 않는 학생에게 다른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sup>56)</sup>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의 <2009학년도 중등 장학 계획>에서도 확인된다.<sup>57)</sup>

5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학위수여이행】 [공98. 12. 15[72], 2830]〉.

55) 김유환,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공법학연구』 9-1(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310-311쪽. 김유환은 평준화정책을 당시의 권위주의적인 문교정책에서 나온 비민주적 제도화의 전형으로 보고 민주적 재편성을 요구한다.

56)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e\\_kor/civil/intro/faq/qa\\_0/qa\\_01/1210491\\_10376.html](http://www.mest.go.kr/me_kor/civil/intro/faq/qa_0/qa_01/1210491_10376.html)).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여건에 따라 학생에게 필수 이수 과목을 부여할 수 있다. 즉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2008년 7월 8일자 전자민원 청구 내용).

57) 서울시교육청([http://www.sen.go.kr/view/jsp/search/search\\_all.jsp](http://www.sen.go.kr/view/jsp/search/search_all.jsp)). 서울시교육청의 ‘종교교육 지침 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종립사학 현장에서 신앙교육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제4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제기된다. 그리고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종교교과교육이 종교를 가르치는 신앙교육(education of religion)이 아니라 종교에 관해 가르치는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새로운 종교교육으로 영성교육(spiritual education in religion)도 제시한다. 그렇지만 현직 종교교사들 사이에는 종교교과교육의 성격을 여전히 신앙교육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입장이나 종교에 관해 가르치는 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갈등을 빚기도 한다.

사실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교육의 상위 범주는 ‘교양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양교육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범주인 종교교과교육의 목표도 ‘교양인의 양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과 교육은 ‘신앙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신앙교육이다. 종교교과교육의 목표를 둘러싼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그 갈등은 두 목표의 관계를 조율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사학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의 관계가 ‘공공성 내 자율성’으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학과 사학 교육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교육에서 양자의 관계도 역시 ‘공공성 내 자율성’으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를 국고 보조 등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종립사학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교양교육 목표와 신앙교육 목표의 관계는 ‘교양인으로서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율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정교분리와 교육 - 종교의 분리가 원칙인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입장이라기보다 현직 종교교사들과 종립사학이 취해야 할 목표가 될 것이며, 잠재적 교육과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교과교육의 목표를 ‘교양인으로서의 성숙한 신앙인 양성’에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종교교과교육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교양선택과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양선택과목의 목표에 따라 일차 목표가 교양인의 양성이 되어야 한다. 비록 학교

---

한다. 정규 교과 이외의 종교 관련 활동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종교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학생 활동 및 교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종교 과목의 평가는 이수 여부만 기록하고 성취도는 산출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건학이념의 실현 및 사학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신앙교육이나 영성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양교육의 하위 범주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종립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종교교과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미 학교 운영과 그 교육에는 공공성이 전제된다. 이는 종립사학에서 진행되는 종교교과교육에도 공공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사실 국고 보조를 통해 사학에 공공성이 요구되던 제4차 교육과정 상황에서 종교선전으로서의 종교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종교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질 필요가 있지만 국가가 당시 종립중등학교에 자율성만을 주기 위해 종교교과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종교교과교육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켜 공공성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각종 판례를 검토해 보면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사학의 자율성이 규정되었고, 따라서 사학이 공공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초국가적인 절대적 자율성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근거한 사학의 자율성이 공공성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그 제한은 합리적 제한이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종립사학도 초국가적인 절대적 자율성 차원이 아니라 공공성 내의 자율성 차원에서 종교교과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종립사학이나 현직 종교교사들이 종교교과교육의 목표는 ‘교양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의 양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 여기서 종교교과교육은 다양한 종교현상과 내적 신앙에 대한 지적 성찰이 우선되는 교육이다. 다양한 종교현상과 내적 신앙에 대한 지적 성찰은 지식에 모종의 가치와 시선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 차원과 정의적, 의지적 차원과도 연결된다.<sup>58)</sup> 이 점을 감안하면, 지적 성찰을 거친 교양인이라는 목표가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 양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지적 성찰을 거친 교양인에게 종교별 주요 가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58) 존 실리 지음, 강돈구·박진원 옮김, 『종교교육이론』(서광사, 1992), 137-146쪽.

관련 지식은 ‘순수한’ 또는 ‘절대적’ 객관성이 아니라 우리와 타인의 공감대 또는 교집합인 상호주관성에 근거한 객관성을 지향한다. 물론 종교교과교육의 목표에서 성숙한 신앙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남겨진 뜻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사학과 학교교육이 ‘공공성 속의 자율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을 때, 종교교과교육에서도 양자의 관계는 ‘공공성 속의 자율성’으로 조율될 수 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 종교선전으로서의 종교교과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신앙인의 양성’보다 ‘지적 성찰을 거친 교양인의 양성’이 일차적이어야 한다. 전자는 후자를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여기서 교양인과 신앙인 개념은 공공성과 자율성의 관계 설정에 따라 분석적 차원에서만 구분되며, 현실적으로 명확히 분리·구분되기 어렵다. 만약 종립중등학교가 종교교과교육의 목표를 ‘교양인으로서의 성숙한 신앙인 양성’에 둔다면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종교교과교육은 종립사학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 나오면서

필자는 2장에서 종립중등사학의 자율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사립중등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후 두 관계를 ‘공공성 내 자율성’으로 조율하였다. 3장에서는 사립중등학교의 자율성 축소 및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과 인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공립학교 및 일반 사학과 달리 종립중등사학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종교교과교육임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개신교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종립사학의 현장과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서, ‘공공성 내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종교교과교육의 일차 목표를 ‘지적 성찰을 거친 교양인의 양성’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종립사학이나 현직 종교교사들의 입장에서 전학이념의 실현과 관련된 ‘성숙한 신앙인의 양성’이라는 목표도 전자에 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종립사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국민의 교육권이라는 공공성에 근거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공공성 내 자율성'으로 이해된다. 달리 표현하면 사학의 자율성은 합리성·민주성·투명성이라는 공공성을 근거로 한 자율성이어야 한다. 종립사학의 종교교과교육이 가지는 자주성도 역시 공공성 내 자율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종립중등사학도 국고 보조의 현실,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으로 강조되는 경향 등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이 공공성을 지녀야 하는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종교선전교육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종교선전으로서의 종교교육(education of religion), 즉 신앙교육은 최소한 학생의 신앙 또는 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그리고 공공성을 앙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종교교과교육의 일차 목표가 '특정 종교인의 양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종교교과교육의 일차 목표를 '특정 종교인의 양성'에 둘다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졌거나 어떤 신앙도 가지지 않으려는 학생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 종교교과교육의 일차 목적을 명상 등을 통해 학생들의 내면에 선협적으로 존재한다는 모종의 영성을 가정하고 그것을 끌어내려는 최근의 일부 경향을 지양한다. 이러한 영성교육(spiritual education in religion)에는 영성의 선협성, 영성과 영성교육의 개념, 호교론의 위험성 등 짚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정 종교가 배경이거나 특정 신앙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진행하는 영성교육이 영성교육에서 말하는 '범종교적인 영성'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서 영성교육을 지향하는 종교교과교육을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 시점에서 영성교육을 지향하는 종교교과교육이 종립중등사학의 자주성, 그리고 종교교과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필자는 현 시점에서 종교교과교육을 성찰적 종교교육(reflexive 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명명한다. 성찰적 교양인의 양성 교육은 호교론적 입장에서 특정 신앙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다른 신앙 지식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또한 선협적인 모종의 영성을 가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무미건조하다는 객관적 지식의 전달 교육이나 신앙을 후퇴시키는 교육도 아니다. 물론 성찰적 종교교육에서 신앙 영역은 학생들의 뭇이 된다.

성찰적 종교교육은 지적 차원이 정서적, 의지적 차원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지적 차원에서 다양한 종교 현상과 내적 신앙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끊임없이 반추하며 우리와 타자에 대해 사유한다. 물론 지적 성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는 정서적, 의지적 차원의 고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종교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종립사학이나 현직 종교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성찰적 종교교육은 ‘교양인으로서의 성숙한 신앙인 양성’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는 다문화사회나 다문화가정 등의 용어가 빈번히 유통되면서 다문화교육이 강조된다. 다문화가정과 다문화모임 등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감안하면 다문화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주된 가치는 타자에 대해 타자성을 발견하고 제도적으로도 용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동시에 타자를 타자화하여 그들에게 모종의 태도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배려이다. 그와 관련하여 성찰적 종교교육은 종교선전교육이나 영성개발교육보다 다문화사회의 가치에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종립중등사학의 종교교과교육이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점임을 주지하고, 그 일차 목표를 성찰적 종교교육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87-7호, 1987. 3. 31. 중학교 교육과정, 제88-7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1992-11호, 1992. 6. 30. 중학교 교육과정, 제1992-17호 1992. 10. 30. 고등학교 교육과정〉(제6차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강경근, 「학문의 자유와 사립학교 관계법률의 헌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0,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150쪽.

강돈구·윤용복·이혜정·송현주·류성민, 『종교교육 비교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9, 39쪽.

고병철, 「한국 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 - 종립 고등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1,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28-129쪽.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 중등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46, 한국종교학회, 2007, 20-30쪽.

김병주·김은아·안장자, 「사립학교법에 나타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교육관련 집단의 인식」, 『동아인문학』 13, 동아인문학회, 2008, 464-471쪽.

김병주·김은아·우석구,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의식이 제35차 개정 사립학교법 인식에 미친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6-1,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227-230쪽.

김유환,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공법학연구』 9-1,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310-311쪽.

김형구, 「한국 중등사학의 성장」, 『교육학연구』 41-2, 한국교육학회, 2003, 340-342쪽.

박부권,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 『교육사회학연구』 18-1, 한국교육사회학회, 2008, 22-23쪽; 34-35쪽.

송기준, 「판례분석: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76 판결 비판」, 『민주법학』 3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409-441쪽.

신현직, 「사립학교의 법적지위」, 『사회과학논총』 8,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90-100쪽.

양칠문, 「한국 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 교학연구사, 1998, 286-287쪽; 318-319쪽.

이시우, 「사립학교운영과 사립학교법」, 『교육법학연구』 13, 대한교육법학회, 2001, 127-130쪽.

조석훈,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법학연구』 16-2, 대한교육

- 법학회, 2004, 277-278쪽.
- 존 실리 지음, 강돈구·박진원 옮김, 『종교교육이론』. 서광사, 1992, 137-146쪽.
- 최상천, 「사립학교의 전환: 사유재산에서 공교육기관으로 -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 『인물과 사상』 95, 인물과사상사, 2006, 47-51쪽.
- 허종렬,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그 비판」. 『교육비평』 6, 교육비평사, 2001, 47-52쪽.
- 황준성·박재윤·정일환·문성모·신지수,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 관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19-2, 대한교육법학회, 2007, 183-191쪽.

## 국 문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종립사학에 공공성과 자율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 시점을 감안하여 종립사학, 나아가 종교교과교육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검토하고 정립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장에서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관계를 ‘공공성 내 자율성’으로 정리한다. 3장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축소와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립사학이 국·공립학교 및 일반사학과 차이를 보이는, 즉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종교교과교육임을 지적한다. 4장에서는 개신교 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종립사학의 현장과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종교 교과교육의 일차 목표를 ‘지적 성찰을 거친 교양인의 양성’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학이념과 관련하여 종교교과교육을 통한 ‘성숙한 신양인 양성’이라는 목표도 ‘공공성 내 자율성’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투고일** 2009. 10. 9.

**수정일** 2009. 12. 2.

**제재 확정일** 2009. 12. 4.

**주제어(keyword)** 종립사학(Religion-Affiliated Private Schools), 종교교과교육(Education for Religious Subject Matter), 공공성 내 자율성(Independent nature in Public Nature), 교양인(Cultivated Man), 성찰적 종교교육(Reflexive Education about Religion)